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술논문집발간규정

제정 2006. 3. 6.

개정 2010. 8.30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8.30>
- 제2조 (명칭 및 종류) ① 학술연구논문집의 명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집(이하 "논문집"이라 한다)이라 하며, 간행 순서에 따라 제00집이라 표시한다. <개정 2010.8.30>
 - ② 각 대학원 및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의 명칭은 각 대학원과 연구소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발간) ① 논문집은 연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당해 학년도 2월 말일로 한다. 다만, 필요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.
 - ② 논문집은 산학협력단에서, 대학원 및 연구소의 논문집은 각 대학원 및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발간한다.
 - ③ 논문집 발간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- 제4조(투고자의 자격) 논문의 투고는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한한다.

다만, 조교와 외부 투고자는 전임교원과 공동집필자로 투고할 수 있다.

제5조(원고의 작성) 원고 작성방법 및 체제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

른다.

- 제6조(논문심사) ① 접수된 논문은 전공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-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.
 - ③ 게재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.
- 제7조(판정) ① 논문심사의 초심 판정은 게재가, 수정후 게재, 수정후 재심,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,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.
 - 1. 심사위원 전원이 '게재가'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없이 채택한다.
 - 2.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.
 - 3. '수정후 게재'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연구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.
 - 4. '수정후 재심'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 정한 후 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한다.
 - 5.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. 만일 가부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는 연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- 6. 위 1호 내지 5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연구위원장은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논문심사 의뢰기관(의뢰자)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조(교정) 발간시 교정은 저자가 하며 교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개별 추

가는 할 수 없다.

제9조(배부) 발간된 논문집은 관계부서에 배부한다.

제10조(논문심사료)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제8조 제4항에 의거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료를 논문투고자가 부담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간된 논문집은 종전의 방침에 따른다.

제2조(발간호수) 논문집 발간호수는 2005. 4. 27폐지 규정 전 발간호수에 이어서 표기한다.

부칙(제631호, 2010.08.30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